

“함께 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 대한건설협회

수신자 외국인력 고용업체 대표이사

제목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처분 특별해제’ 등 규제개선 완화사항 안내

1. 외국인력고용지원팀 제146호(‘22.9.7)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요건 완화’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국회와 정부는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당정·건설업계 간담회(‘22.12.20)’를 개최하였고, 건설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고용의 악순환을 끊고 합법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제한처분 특별해제’를 포함한 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다 음 -

### 〈 협회건의 반영사항 〉

□ **건설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제도개선(‘22.12.20, 당정·건설업계 간담회)**

① **고용제한처분 해제**

○ 고용제한처분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고용노동부 소관), ‘출입국관리법’(법무부 소관)에서 각각 적용 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허가 없는 근로자 사용 등에 따른 고용제한처분 해제(97%) (법 제20조 ①항 1호)**

※ ‘22.12.31까지 고용제한처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23.1월부터 고용제한 기간이 3개월 경과한 업체부터 단계적 해제

· 다만, 고용허가가 허위·부정발급 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법 제20조 ①항 2호), 동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아 고용제한(법 제20조 ①항 3호)는 제외

※ ‘23.1.2 시행

- **(출입국 관리법,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③항\*, 제21조 ②항\*\*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벌금을 납부한 고용주)**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

\*\*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한 사업주

- 제외 : 단, 유흥업소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업종과 허위초청, 각종 형사범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용이 제한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22.12.15 시행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22.11.7~‘23.2.28)

## ② 총량제한 개선

- **(H-2 취업허가 한도 폐지)** (현행) 25만명 중 6만명 한도 → (개선) 한도폐지  
※ '22.12.28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확정
- **(E-9 쿼터 추가배정)** (2022년) 2,400명 +  $\alpha$ (360명) → (개선) 3,000명 +  $\alpha^*$   
\* 탄력배정분(1만명) 추가배정(산업별 안분)

## ③ 인력운용 관련 제도개선

- **(현장간 이동제한 완화)** (현행) 현장간이동이 공사현장 종료 또는 특정 공기만료시만 허용 → (개선) 발주처 및 원청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현장간 이동 추가허용  
\* ① 자재가격 급등 등 자재수급 차질, ② 선행 또는 동시 진행 공정의 지연·변경, ③ 천재지변, 계절적 요인, ④ 법원 가처분 결정, 각종 민원 발생 등 (단, 중대재해 발생 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로 인한 중단은 제외)  
※ '22. 12.19 시행
- **(고용허가서 신청요건 완화)** (현행) 하나의 현장에서 잔여공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고용허가서 발급 → (개선)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복수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복수현장의 잔여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 '22. 9.7 시행

3. 또한, 정부는 ‘고용제한 특별해제’이후 고용제한처분을 다시 받는 업체가 줄어들어 동 고용제한 특별해제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향후 재발방지를 우리 협회에 요청해 오에 따라 주요위반 사례를 붙임3과 같이 안내하오니 새로 고용제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3년도분 2회차 신청을 (잠정)’23.2.1~2.14 748명을 접수받을 계획이고, 우선 구인노력을 워크넷 등에서 14일간 먼저 진행해야 ‘23. 2월에 있는 신규고용허가서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주의사항 : 현장별로 구인노력을 하셔야 함(본사에서 구인노력을 한 경우와 사무직 구인은 인정되지 않됨)

※ 구인노력기간 : 원칙 14일, 예외 7일(예시 : 2022. 2.1에 구인신청한 경우 2.15부터 5.14까지 3개월간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가능)

